

보상판례요지:

[행정소송의 제기]

1. 行政訴訟의 提起要件

토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 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 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 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06.12 선고 89누8187 판결)

2.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은 위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청구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상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자의 재량범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가 이의 재결을 한 경우 다시 이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소기간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6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용할 토지의 구역이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분쟁 등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요긴하다. 또한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미리 소유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뒤에 수용 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서로 다투어 온 당사자로서는 재결의 의미와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바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나 제소에 따른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소기간 1개월은 결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보다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착오를 일으켜 제소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특별법에서 일반법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에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08.29 선고 93헌바63, 95헌바8 결정)

3.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의 추완은 가능하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 내에 그이의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7.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7.27. 법률 제 4770호로 개정되어 1998.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는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두8049 판결)

4. 토지수용사건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시간이 경과 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7517 판결)

5. 提訴期間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다른 토지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905 판결)

6. 行政訴訟 提起要件 및 주장할 수 있는 瑕疵의 범위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288 판결)

7.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위원회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누5561 판결)

8. 행정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대상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

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09.15 선고 93누20267 판결)

9.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7.09 선고2001두10684 판결)

10. 재결주의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도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두1468 판결)

11. 재결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자율적인 통제 및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임에 반하여, 재결주의는 위법한 원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법리상·실정법상의 근거를 전혀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이 재결주의를 정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절차가 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별 법률이 재결주의를 취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상을 이의재결로 명백히 정하고 있는 한 이의신청절차를 필요적 전심절차로 둔다는 취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06.28 선고 2000헌바77 결정)

12.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288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78.02.14 선고77누107판결 ; 1980.05.27 선고 79누224판결 ; 1983.02.08 선고 81누420 판결 ; 1983.06.14 선고 81누254 판결)

13.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1.26 선고90누9971 판결 ; 1996.04.26 선고 95누13241 판결

14.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종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

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395 판결)

15.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 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4324 판결)

16.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3572 판결)

17.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누16287 판결)

18.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하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19.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 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과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고시단계에서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쟁송기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2.03.22 선고 2001누9150 판결)

20.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난지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시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재결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재결처분의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행하여진 후행절차인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소송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83.07.19 선고 82구259 판결)

21. 收用裁決에 대하여서도 無效確認을 소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적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01.09 선고 91누8050 판결)

22. 無效確認의 訴訟에서 異議確認요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누15789 판결)

23.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누18741 판결)

24.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03.28 선고 92누15772 판결)

25. 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누7774 판결

26. 補償金の 増減에 관한 訴訟은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27.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1.26 선고91누28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908 판결 ; 1992.04.14 선고 91누1615 판결 ;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28. 보상금의 증감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행정소송법의 제9조사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제2항, 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18655 판결)

29.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입증책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

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08 선고 89누7801 판결)

30.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손실보상금 청구금액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한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2256 판결)

3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94.06.24 선고 93누21972 판결)

3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2718 판결)

33.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損失補償請求方法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 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5058 판결)

34.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8473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402 판결 ;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 1992.04.14 선고 91누1615 판결 ; 1998.05.26 선고 98두1505 판결 ; 2002.06.28 선고 2002두 2727 판결

35.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구 하천법(1999.2.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6.28 선고 93다46827 판결 ; 1998.10.02 선고 96누5445 판결